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14700 대학교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설문작성 강제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성적 확인과 연계하여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00대학교 총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00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대학교 학생이다. 진정인은 2018. 12. 00.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설문조사에 답변하여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지에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위하여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재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진로 및 학업관련 인식, 자기 및 대인관계 인식, 정신건강 수준,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 내에서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나. 본 조사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학번,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 응답결과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다.

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이 사건 설문조사가 문제가 되자,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설문 목적 안내문을 제시하였으며, 응답 선택지에 '미응답'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조사 진술, OO대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

가.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기구이며, 소장은 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있다. 연구소의 목적은 “전문상담과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정체성 정립, 인격 성숙, 적응력 향상을 돕는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전국 대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채점기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확인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초 열람기간 중 일정기간(약 3일 내외) 동안은 본인의 학점에 대하여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정기간’을 두고 있고, 정정기간이 지난 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해당학기의 최종학점이 확정된다.

다. OO대학교 학생들도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② ‘종합정보시스템’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③ ‘학부-해당학기 성적조회’란에서 모든 수강과목에 대한 강의평가(2018년에는 이 사건 설문조사 포함)를 완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적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 OO대학교에서는 2018. 12. OO. ~ 2018. 12. OO.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12. OO. OO:OO부터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2018. 12. OO. OO:OO까지 성적 정정기간을 두었다.

마.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조회 전 강의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연구소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8학년도

1학기에도 동일하게 시행된 바 있다.

바. 이 사건 설문조사는 개인 신상 및 생활환경(5개 항목), 진로(20개 항목), 타인과의 관계(12개 항목), 학업진행(9개 항목), 학교에서의 학업 의향(3개 항목), 삶의 만족도(2개 항목), 스트레스 대처방식(14개 항목), 최근 감정 경험(10개 항목),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 경험(5개), 성인식 조사(15개 항목), 소속대학, 학년, 입학년도 및 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질문들에서 학번 및 성명 등을 기입하게 하지는 않았고, 연계 질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 단계로 이행이 가능하였다.

사. 당초 설문지에는 설문 목적이 기재되지 않고 ‘미응답’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은 2018. 12. 26. 설문지를 개선하여 설문조사의 목적을 기재하고, 5개 항목에 대하여 ‘미선택’ 항목을 추가하였다.

※ 2018. 12. OO. ‘미선택’ 항목이 추가된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재 연애 상대의 유무 및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②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의 정도③ 만남을 가진 뒤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④ 처음 성관계를 가진 시기⑤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이름과 학번, 전화번호 등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성별, 군필 여부, 합격전형 및 단과대학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와 성적 지향 및 성과 관련된 신념,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조사는 그 목적 자체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항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조사대상자의 임의응답을 전제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매우 예외적으로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대안적인 응답 방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설문조사의 형식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만 하는데,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으면 성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피진정인이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설문조사 응답을 성적 확인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로 넣은 것은 학생들과 성적 확인 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조사대상자인 재학생 모두에게 설문조사 응답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나, 성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본인의 성적 확인을 포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설문에 응하게 강제 혹은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거짓으로 응한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설문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고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설문조사 형식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이전에 설문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설문조사가 피진정인의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피진정인이 제시한 학칙은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문조사의 형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설문조사의 목적은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며, “전문상담과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정체성 정립, 인격 성숙,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의도에서 시행한 것으로, 설문조사의 목적이나 의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문조사의 목적이나 의도는 성적 확인과 연계하는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하거나 실현할 수 있으므로,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기초자료수집이라는 설문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대학홈페이지 팝업 창, 연구소 게시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 게시, 표본조사나 심층조사, 대면조사 등, 설문대상자의 자발성,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조사형식을 통하여 기초자료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방식에서도 ‘하지 않음’이나 ‘다음에 하기’ 등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응답방식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

피진정인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비율이 높아질 경우 통계 상 문제가 있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설문조사의 목적과 그 활용상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선택한 것은 시간과 전문성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부차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만이 있을 뿐, 기초자료의 신뢰성이나 가치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문조사는 그 형식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중요성과 관련한 사항일 뿐 피진정학교에서 특별히 성인식 및 태도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필요성이 중대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선택’ 항목이 뒤늦게 추가된 항목 이외에도 진로 계획,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연애 경험 유무, 왕따 경험 유무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질문들은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인 것은 명백하며,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질문사항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로그인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낸 뒤 실시하는 설문이었고, 2018. 12. 26. 추가된 ‘설문 목적 안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사의 취지, 개인정보 관리 방식 및 관리 기간, 활용방법 등을 인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설문조사 질문들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개연성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설문조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진정인의 목적은 추상적인 반면, 설문조사의 질문들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므로, 이 사건 설문조사의 실시는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설문조사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과도하게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OO대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8.

위원장 정문자

위원 조현욱

위원 김민호

<별지>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OO대학교 학칙

제6조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부설 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2. 부설연구소
...(중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4.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2조 연구소는 전문상담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정체성 정립, 인격 성숙, 그리고 대학생활의 적응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신입생과 재학생 만족도 및 학사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